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 (2007.1.1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28호)가 2007. 1. 12 개정 공포되어 2007. 1.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 기준을 게시합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함경수(02-2100-4118) <별표, 별지를 포함한 전문은 <http://www.mogaha.go.kr/gpms/index.jsp> 에서 확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행정자치부예규 제 182 호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 (평가기준) ①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 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중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역입찰유 의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4. 재무제표**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



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다.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지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지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서식)

제5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6조 (기타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예규는 2007년 1월 15일 이후 입찰공고한 기술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기술인력평가 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2.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 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0호)은 폐지한다.